

의정활동보고서

제195회 임시회(2005. 1. 14)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2005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첫 번째로 의정을 여는 제195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월 7일에 열린
신년 교례회에 이어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울 한해도 건강과 기쁨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도는 안정된 가운데 꾸준히
성장세를 일구어 왔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 경북을 사랑하고 아끼는 「300만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난 60년전 을유년은 국가적으로 볼 때 민족의 광복을 맞이한 뜻 깊은 역사
적인 해 이기도 합니다.

올해 맞이하는 을유년은 지방분권 확립으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원년의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다함께 경북의 새 역사를 향해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을 한해는 도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생산적인 의정이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고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1. 14

경상북도의회의장 李 哲 雨

차 례

I . 개 황

II . 의사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III .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상임위원회

IV . 민원 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조례 공포 사항

2. 위원회 활동사항

VI. 기타사항

VII. 5분 자유발언

부 록

□ 조 례 안

1.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95회 임시회는 2005년 1월 14일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1월 14일(금)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상호 의원)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한 후 제1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수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다. 집회 공고일 : 2005. 1. 10(월)

라. 집회일시 : 2005. 1. 14(금)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5. 1. 14(1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1회 (누계 68회)

3. 활 동

가. 본회의

개회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5. 1.14(금) 11:00 (제1차)	1. 5분 자유발언 ○ 이상호 의원(경주, 농수산위원회) 2.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Ⅲ. 의안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의 · 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2 (269)	2 (266)	1 (235)	1 (30)	(1)	(1)	(2)	
조 례 안	소 계	2 (123)	2 (123)	1 (108)	1 (14)	(1)		(2)	
	의회 제안	(11)	(11)	(5)	(5)	(1)			
	도지사 제출	2 (93)	2 (91)	1 (84)	1 (7)			(2)	
	교육감 제출	(21)	(21)	(19)	(2)				
예산 · 결산		(25)	(25)	(12)	(13)				
동의 · 승인		(74)	(74)	(73)	(1)				
건의 의 안		(10)	(10)	(9)	(1)				
결 의 안		(10)	(10)	(10)					
기 타 안		(25)	(24)	(23)	(1)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상임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 회	계 류
		가 결							부 결		
		계	조 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268)	(267)	(123)	(25)	(74)	(10)	(10)	(25)	(1)	(1)	(2)
의 회 운 영	(8)	(7)	(5)				(2)		(1)		
기 획	(17)	(17)	(10)		(5)	(1)		(1)			(1)
행 정 사 회	(76)	(76)	(50)		(24)	(1)	(1)				(1)
교 육 환 경	(35)	(35)	(25)		(9)			(1)			
농수산	(17)	(17)	(5)		(10)	(2)					
산 업 관 광	(40)	(40)	(16)		(20)	(2)	(2)				
건 설 소 방	(20)	(20)	(11)		(6)	(2)		(1)			
특 별	(25)	(25)		(25)							
본회의	(30)	(30)	(1)			(2)	(5)	(22)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1 (99)	(8)	(12)	(11)	(20)	(9)	(8)	1 (13)	(10)	(12)
의 회 운 영										
기 획	(4)				(1)		(1)			(2)
행 정 사 회	(10)	(5)	(3)	(1)	(1)					
교 육 환 경	1 (23)			(1)		(9)		1 (12)		(1)
농수산	(9)			(1)	(1)				(7)	
산 업 관 광	(23)		(9)	(3)			(7)			(4)
건 설 소 방	(31)	(3)		(5)	(17)			(1)	(3)	(2)
특 별 위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1 (99)	1 (99)				
의회운영						
기 획	(4)	(4)				
행정사회	(9)	(9)				
교육환경	1 (22)	1 (22)				
농 수 산	(8)	(8)				
산업관광	(22)	(22)				
건설소방	(31)	(31)				
특별위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4.12.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2004.12.21
2004.12.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4.12.27
2004.12.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2005.1.10
2004.12.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5.1.10
2004.12.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립대학 운영 조례안	2005.1.10
2004.12.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2005.1.10
2004.12.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5.1.10
2004.12.2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립학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5.1.10

2. 위원회 활동사항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2005.1.10(월) 10:30	운영위원회 회 의 실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 협의안 : 임시회 회기 협의 · 참 석 : 안순덕 의회운영위원장 외8명

VI. 기타사항

☐ 성균관 유도회 경북본부 회장 취임식

- 일 시 : 2004. 10. 29(금) 11:00
- 장 소 : 대구향교 교육회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 대한적십자 창립 제99주년 기념 경북지사 연찬대회 및 봉사원대회

- 일 시 : 2004. 11. 1(월) 11:00
- 장 소 : 구미 박정희 체육관
- 참 석 : 이정백 부의장(축사), 이용석 농수산위원장

☐ 제41회 경북학생체육대회 개회식

- 일 시 : 2004. 11. 2(화) 11:00
- 장 소 : 경주 실내체육관
- 참 석 : 정 보 호 교육환경위원장, 권준택 의원, 김선종 의원,
김순견 의원, 김준호 의원, 박종욱 의원, 이 달 의원,
장미향 의원

□ 제6회 경북학생축제 개최식

- 일 시 : 2004. 11. 3(수) 13:00
- 장 소 : 포항 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정보호 교육환경위원장, 권준택 의원,
김선중 의원, 김순전 의원, 김준호 의원, 박종욱 의원,
이 달 의원, 장미향 의원

□ 구미디지털 전자전시회 및 e-Biz엑스포

- 일 시 : 2004. 11. 5(금) 11:00
- 장 소 : 구미 박정희 체육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이용석 농수산위원장

□ 지역발전을 위한 국제화전략 정책포럼

- 일 시 : 2004. 11. 5(금) 14:00
- 장 소 : 대구 파크호텔
- 참 석 : 이용석 농수산위원장

□ 제44회 경북도4-H 경진대회

- 일 시 : 2004. 11. 6(토) 10:00
- 장 소 : 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 참 석 : 이용석 농수산위원장(축사), 손만덕 의원

□ 2004 경북리그 개막식

- 일 시 : 2004. 11. 6(토) 11:00
- 장 소 : 경주 황성공원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 제9회 농업인의 날 행사

- 일 시 : 2004. 11. 9(화) 14:00
- 장 소 : 대구국채보상기념공원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이용석 농수산위원장, 김주연 의원

□ 2004 지방의회의원 정보화 워크숍

- 기 간 : 2004. 11. 11(목) ~ 11. 12(금)
- 장 소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 참 석 : 권종연 의원, 김병진 의원

□ 『유비쿼터스-경북』 전략 심포지움

- 일 시 : 2004. 11. 12(금) 10:30
- 장 소 :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 참 석 : 이정백 부의장(축사), 이원만 기획위원장

□ 제85회 전국체전 해단식

- 일 시 : 2004. 11. 12(금) 14:30
- 장 소 : 경북체육고
- 참 석 : 채희영 산업관광위원장, 한혜련 간사, 김정기 의원

□ 민족통일 경상북도대회 및 한민족통일 문예제전 시상식

- 일 시 : 2004. 11. 15(월) 14:00
- 장 소 : 경주 서라벌대학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 경상북도 투자유치 설명회

- 일 시 : 2004. 11. 16(화) 17:30
- 장 소 : 서울 하얏트 호텔
- 참 석 : 채희영 산업관광위원장

□ 울릉군 보건의료원 준공식

- 일 시 : 2004. 11. 17(수) 14:00
- 장 소 : 울릉군 보건의료원
- 참 석 : 정보호 교육환경위원장(축사)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일 시 : 2004. 11. 17(수) 14:00
- 장 소 : 경기도의회
- 참 석 : 안순덕 의회운영위원장

□ 전국 시·도의회의회장 협의회

- 일 시 : 2004. 11. 18(목) 11:00
- 장 소 : 부산광역시의회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제2회 소방현장 활동 사진작품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 일 시 : 2004. 11. 18(목) 14:00
- 장 소 : 상주관광호텔
- 참 석 : 이정백 부의장(축사)

VII. 5분 자유발언

□ 제1차 본회의(2005. 1. 14)

이상효의원 (경주시, 농수산위원회)

○ 경주출신 이상효의원입니다.

먼저 새해 을유년을 맞이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도지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첫 의회에서 본의원이 오늘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원칙도 없이 오락가락 하는 이 참여정부를 믿고 국책사업 하나 없는 우리 경북이 나아갈 길이 그저 암담해 보이기에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30일 정부는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 최종후보지를 원칙과 상식을 초월하여 정치적 흥정에 의해서 전북 무주로 확정·발표하고 말았습니다. 태권도 역사를 세우는 거대한 국책사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부당하게 탈락된 경주시민들은 연말과 새해를 허탈함과 원통함, 그리고 좌절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보내야만 했습니다.

30만 경주시민의 자존심을 정부가 무참히 짓밟아 놓았습니다. 정치적 논리에 의한 지역감정의 최대 희생자임을 자타가 항상 주장해 온 노무현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내세운 정책기조는 지역화합과 더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공원 후보지 결정과정을 볼 때 이러한 정책기조가 공염불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후보지 결정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정치적 여건을 배려할 것이라든가 동계올림픽 개최후보지 결정을 놓고 빅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원칙을 정해놓고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1차 평가항목과 정치적 색채가 강한 추진위원으로 구성된 2차 평가위원단의 중복과 또 당초 평가기준과 중복된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이 1차 평가에서 점수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지자체 역량 부분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1차 평가에서 무주가 63점, 경주가 87점으로 무려 24점이나 높게 평가된 항목이 2차 평가에서 경주가 15.07, 무주가 18.53

으로 오히려 3.46점이나 경주가 적게 평가가 되었고, 부지적합성은 1차 평가에서 경주가 501점, 무주가 492점으로 평가되었지만 2차 평가에서 경주가 22.8, 무주가 26점으로 이 또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30만 인구를 가진 경주시가 3만 인구를 가진 무주군에 비해서 지방자치제의 역량이 부족한지, 또 부지조성을 위해서 30년 전에 개발해놓은 목장터로 개발 비용을 수백억 절감할 수 있는 경주의 부지가 소나무숲이 뽕뽕한 임야에다 깃발 몇 개만 꽂아놓은 골짜기인 무주보다 경제성이나 부지적합성으로 볼 때 낮게 평가되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1,000점 만점 기준 중에서 900점짜리 1차 평가에서 1위를 한 경주가 3위를 한 무주에게 2차 100점짜리 평가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께서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고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놓고 결론은 사전 각본에 의해서 정부가 지방정부를 우롱하고 농락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소림무술가는 성지인 소림사에 있습니다. 태권도의 성지와 관련된 역사적·문화적 상징은 경주에 있습니다. 전 세계 5,000만 태권도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명실상부한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스스로 포기한 정부정책을 볼 때 현 정부의 부도덕한 정책을 믿고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이처럼 홀대받고 있는 우리 경북이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세계역사유적도시 경주는 경마장은 부산에 빼앗기고, 정부가 지정한 문화의 도시 명칭은 광주로 넘어가고, 태권도공원은 무주에 강탈당하고 이제 남은 것은 원전폐기물과 삶의 고통만 주는 문화재만 끌어안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민 300만의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맞대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 록

● 조 례 안 : 2건

-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1. 14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국(부)·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도 본 청

제4조(부지사) ①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②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에 의한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③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지사를 대리한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정부·국회 등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7.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경제통상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과학정보산업국(여유기구), 농정국, 환경산림수산국, 보건복지여성국, 건설도시재난국,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기획, 조정 및 평가분석
2. 도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평가, 조정
3. 행정규제개혁 및 광역행정의 추진
4. 지방의회의 운영·지원
5. 통계의 조사, 심사, 분석 및 공표
6. 도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7. 시군의 예산운영 지도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채 운영
8. 지방공기업 운영 및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영
9. 재정계획의 수립 및 주요 투자사업의 심사
10. 자치법규의 보고, 심사, 공표
11. 소송, 소청 및 행정심판
12.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3. 혁신·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업무추진 총괄·조정

제7조(경제통상실) 경제통상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경제시책 개발·연구·지원
2. 경제분석 및 진흥에 관한 업무
3. 소비자보호 업무
4. 유통산업 발전 및 진흥에 관한 업무
5. 물가대책 및 저축·금융
6. 운수사업체 및 자동차관리사업체 지원
7. 석도·궤도사업 등에 관한 업무
8. 교통안전대책 및 여객자동차서비스 개선
9.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
10.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경영·기술지원 및 육성
11. 지방공단 및 농공단지 관리
12. 노·사·정 협조증진
13. 공산품 품질관리
14. 국제교류·협력의 종합기획 및 조정
15. 국내외 자본등 투자유치
16.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정보 수집제공
17. 수출입 지원

제8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 행사, 보안 및 일반포상
2. 공무원의 시험, 임용, 표창, 징계, 후생, 훈련
3. 각종 자격·면허시험 관리
4. 공인 및 문서관리
5. 민원 및 여권업무 추진
6. 자체방호 및 예비군 훈련
7. 시군행정의 종합 지도감독
8. 행정구역 조정 업무
9. 도, 시군 기구 및 정원관리

10. 주민등록, 선거 및 국민투표 업무
11. 새마을운동 시책추진
12. 민간사회단체,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 등 민간협력 업무의 종합추진
13. 광고물 관리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14. 자연보호 및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추진
15. 지방세 운영 및 세원조사
16. 세입자금의 관리 및 배정
17. 기부금품의 통제
18. 공사, 물품구매 계약 및 지출
19. 관용차량, 중장비 및 관공선 관리
20. 국·공유 재산관리

제9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육성
2.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무형문화재 발굴
3. 문화재 지정·해제·보호구역 지정
4.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5.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6. 영상음반비디오 삭제 관리
7. 문화엑스포 지원 및 시설관리
8. 체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
10. 청소년 선도 및 보호
11.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12.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13.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추진
14.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조정
15. 세계유교문화축제 및 향토축제 관광자원화 추진
16.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17. 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추진
18. 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사업

제10조(과학기술정보산업국) 과학정보산업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 및 공업진흥계획의 수립
2. 벤처기업, 테크노파크 등 지식정보산업 육성
3. 계량 및 측정의 국가표준화사업 추진
4. 연료수급 및 안전관리대책
5. 전기사업 및 열관리 관련업무 지원
6.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7.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지원
8.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추진
9. 지방대학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지식기반산업 육성지원
11. 화학·소재·부품 등 생활산업에 관련 업무
12. 해양과학진흥 및 개발업무
13. 도정 정보화사업의 추진
14. 지역정보화 시책의 개발
15. 행정전산망의 운영·관리
16.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대민 정보서비스
17. 통신시설의 관리

제11조(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 발전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
2. 농민 소득증대사업 등 추진
3. 정예농업 인력의 육성
4. 농업경영조직체 지원
5.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축산물 수출 진흥 대책
7. 식량의 안정적 생산 지원 및 농업환경 보전
8. 농약, 비료, 종자 및 농기계 관리
9. 정부양곡 관리
10. 농지개량사업 추진 및 농지개량조합 지도
11.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
12. 경지정리사업

13.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14. 농산물 유통시설 및 기반확충
15. 원예, 특작, 과수, 화훼, 양잠 등 소득작목의 육성
16. 축산업 구조개선 및 경영관리
17. 사료수급 및 자원개발
18. 축산물 위생 및 유통개선 사업
19. 가축질병예방 및 축산공해 예방

제12조(환경산림수산물) 환경산림수산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
3. 환경평가에 관한 사무
4. 배출시설 지도 관리
5. 유해 화학물질 관리
6. 폐기물 관리 및 자원재활용
7. 먹는 물 및 생활용수 관리
8. 오·분뇨·축산폐수 관리
9. 상·하수도 사업
10. 산림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공유임야 관리
11. 산불예방 진화 및 산림보호
12. 양묘·조림·육림 및 목재수급 관리
13. 보안림, 보존임지 및 사방지 관리
14. 자연휴양림, 수목원조성 등 산림휴양시설 관리
15. 임산물 유통, 목재가공 이용 및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16. 연안오염 방지대책 등 해양환경 보전
17. 수산시설 확충 및 수산자원 보호육성
18. 증·양식어업 기술 및 기자재 보급
19. 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불법어업 지도 단속
20. 연안항 및 지방어항 관리
21.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자원의 개발연구
22. 내수면 어업 개발
23. 어촌 발전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

24. 어민 소득증대사업 추진 및 정예 어업인력의 육성

25. 수산물 수출진흥대책 등

제13조(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종합대책
2. 장애인 복지, 재활, 생활보호 및 이주민 구호
3.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업무
4. 가정폭력 및 가정의례지도
5.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6. 노인 및 아동복지 관련 업무
7. 질병의 예방 및 방역
8. 건강증진 및 식품의약에 관한 사무
9. 보건소, 지방공사 의료원 의료분야 지원 육성
10.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11. 식품위생 지도 관리
12. 공중위생 지도 관리
13. 유아교육 및 보육관리
14.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15.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단체 육성지원

제14조(건설도시재난국) 건설도시재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업무
2. 토지수용 및 산업단지 조성
3. 전문건설업 면허 및 온천관리
4. 택지개발 및 도시재개발 사업
5.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
6.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기술분야 총괄·조정 및 사회간접자본 관련사업 추진
7. 철도, 지하철, 고속·도시철도, 항공 등 교통SOC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8. 도로개발계획 수립·시행
9. 지방도 이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10. 하천개수 및 유지관리
11. 공유수면(해수면 제외) 관리

12. 홍수예방 및 재해, 재난관리 대책
13.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상황실 운영
14. 유도선 관리
15.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및 동원계획 수립
16. 민방위시설 및 경보망 운영관리
17. 주택건설 사업자 및 건축사 지도
1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9. 주거환경 개선사업
20. 지적관리 지도
21. 외국인 토지관리
22.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토지거래 규제업무
23. 건축물대장 관리
24. 지적전산 운영

제15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계획의 수립 시행
2. 소방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3. 화재진압 및 예방지도
4. 소방시설, 장비 등 관리
5. 인명구조, 구급활동 및 관련 기술의 연구 지도
6. 특수재해의 구조활동
7. 긴급 구조구난 상황관리

제 3 장 직 속 기 관

제1절 농업기술원

제16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농업기술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 200번지에 둔다.

제17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연구
3.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4. 비료, 농약, 토양의 시험 및 분석
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6. 주요 농산물의 저장·이용·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종합전산망 관리 및 인터넷 방송 등 농업정보센터 운영
8.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과학영농교육
9.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기능훈련
10. 농촌청소년, 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11.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12. 산학협동 및 해외기술 협력
13.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의 개선
14. 기능성 농축산물의 생산 기술지도
15. 농작물의 병충해 예찰·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6. 농업관련 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경영개선·농업정보 제공
17.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18. 미곡·맥류 기타 주요농산물의 우량종자의 생산과 보급
19. 누에씨 생산보급 및 잠업기반 확충
20. 기타 종자개량, 잠업, 특작개발과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농산물원종장, 잠사곤충사업장, 생물자원연구소, 신물질연구소, 특화작목시험장)

- ①농업기술원에 농산물원종의 개발·보급과 잠종의 생산·개발·보급을 위하여 농산물원종장 및 잠사곤충사업장을 둔다.
- ②생물자원 및 유전자공학 연구를 위하여 생물자원연구소를 둔다.
- ③기능성 및 천연물질 개발·이용·연구를 위하여 신물질연구소를 둔다.
- ④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생리생태, 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성주과채류시험장, 청도복숭아시험장, 영양고추시험장, 상주감시험장,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구미화훼시험장, 풍기인삼시험장을 둔다.

⑤농산물원종장, 잠사곤충사업장, 생물자원연구소, 신물질연구소,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2절 지방공무원교육원

제20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과 도민연수영농기술 교육을 위하여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교육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 516번지에 둔다.

제21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2. 교육수요 조사 및 교육계획의 수립
3.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4. 도민연수 교육
5. 기타 교육훈련 및 도정시책상 필요한 교육

제3절 보건환경연구원

제23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연구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9-1번지에 둔다

제24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소관사무) 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및 기타 전염성 질환과 집단 질병발생에 대한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마약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공중위생법에 의한 세척제 기타 위생용품 및 장난감,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오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입자상물질·가스상물질·악취,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 공중위생법에 의한 공중이용 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침출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정화조·분뇨·축산폐수·정화조의 성능시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오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먹는물관리법·지하수법·수도법에 의한 수질 및 수처리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의 잔디·토양·유출수의 잔류농약 성분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측정망과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 환경 관련기관의 검사 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환경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포함) 및 보건진료소
 2. 상수도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기관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26조(지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둘수 있으며, 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소방학교

제27조(설치) ①법 제104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직무교육 및 신규임용 예정자와 소방관계자에 대하여 소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소방전문 기술연구에 관한 실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소방학교는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960번지에 둔다.

제28조(교장)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의 운영,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소관사무) 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소방공무원의 피교육자 차출과 등록 및 학적관리
3. 교육훈련 성과의 분석 및 평가
4. 소방교재연구 및 편찬
5. 소방교육훈련 및 분임 연구지도
6. 기타 소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절 소 방 서

제30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31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관할구역 내의 소방에 관한 사항
2. 소방력 조사 및 기준 책정에 관한 사항
3. 소방차량 및 장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방계획에 관한 사항
5. 화재진압 및 구조에 관한 사항
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특수장소의 법정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8. 소방용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9. 소방홍보 및 불조심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
10. 건축허가 및 준공시 동의·통보에 관한 사항
11. 구조·구급활동에 관계되는 훈련 및 연습에 관한 사항
12. 구조·구급장비 및 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조대책등 기술의 연구 및 구조대 지도에 관한 사항
14. 소방·구조·구난·구급에 따른 유관기관·단체를 동원하는 훈련에 관한 사항
15. 특수재해 소방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제33조(파출소등) 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파출소 및 구조대를 두며, 파출소 및 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경 도 대 학

제34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도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대학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 947번지에 둔다.

제35조(학장) 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제36조(운영조례 및 학칙) 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대학에 설치하는 학과, 학생정원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사 업 소

제1절 자연환경연수원

제37조(설치) ①도민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애호정신을 증진시키고 대자연속의 단체연수를 통하여 폭넓은 인간성과 넘치는 기상을 키우고, 질서, 협동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길러 주기 위하여 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연수원은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산37번지에 둔다.

제38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연학습 및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2. 단체연수를 통한 심신단련
3. 애향·애국심 및 민주시민정신의 고취를 위한 교양강좌
4. 기타 자연환경보호와 관련한 도민연수에 관한 사항

제2절 가축위생시험소

제40조(설치) ①가축질병의 방역과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이하 “가축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가축위생시험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859-3번지에 둔다

제41조(소장) 가축위생시험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지소) 가축위생시험소에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가축질병의 원인규명 및 검정
2.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의 위생관리
3. 가축전염병 방역 및 검진
4. 중앙단위 연구소의 지역적인 연락시험
5. 기타 가축질병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제3절 축산기술연구소

제44조(설치) ①축산에 대한 기술개발과 전문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이하 “축산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축산연구소는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묵리 산66-1번지에 둔다.

제45조(소장) 축산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첨단 축산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재래가축의 혈통보존 및 경제형질 개발
3. 가축의 능력검증 및 육종개량
4. 고품질·기능성축산물 생산기술 개발
5. 우량종축의 생산 및 보급
6. 체세포 복제가축 생산기술 개발
7. 고능력 수정란의 생산 및 보급
8. 돼지유전자 연구센터 운영
9. 사료작물 재배 및 이용기술 개발
10. 부존자원의 사료화 이용기술 개발
11. 축분뇨 및 축산 폐기물 처리 및 이용
12. 축산농가 기술상담 및 교육

제4절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제47조(설치) ①연안어장의 오염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연안의 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우리도의 바다와 내수면의 특성에 맞는 어류치어, 패류치어를 생산·분류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경상북도수산자원개발연구소(이하 “수산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수산연구소는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 5-98번지에 둔다.

제48조(소장) 수산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어류, 패류 등 기술개발이 된 품종의 종묘 생산
2. 지역 특산품종의 종묘 생산기술 연구·개발
3. 우량품종의 종보존 및 수정란 생산보급
4. 먹이생물 원종보존 및 배양관리 보급
5. 생산종묘의 유·무상방류 및 사후관리
6. 양식어가 기술교육 및 새로운 양식품종 보급
7. 연어의 인공부화 및 사육·방류
8. 담수어의 양식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시험
9. 내수면 토속어종 종보존 육성관리
10. 기타 해수어 및 담수어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

제5절 산림환경연구소

제50조(설치) ①임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국토경관보존과 환경임업에 관한 연구 및 사업시행, 산림문화교육을 위하여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산림환경연구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1030-1번지에 둔다

제51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지소) 산림환경연구소에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임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
2. 중앙임업연구원과의 지역적인 연락시험
3. 우량묘목의 생산보급
4.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 및 보호
5. 사방사업의 설계, 시행 및 사방시설의 관리
6. 도유림내 휴양림, 동물원 및 산림박물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임도시설의 설계 및 시행

8. 산사태 예방 및 복구
9. 산림병해충 예찰, 방역 및 상담지도
10. 임업기술 교육 및 보급
11. 산림병원과 산림학교 운영
12. 산림 생태계 보전 및 산림환경오염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13. 기타 임업발전 및 사업수행상 필요한 사항

제6절 종합건설사업소

제54조(설치) ①도가 시행하는 각종건설사업 및 도로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건설 기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이하 “종합건설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종합건설사업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485번지에 둔다.

제55조(소장) 종합건설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지소) 종합건설사업소에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도로사업의 조사·연구·시험·측량·설계·시행과 공사감독
2. 도로포장공사 시행과 도로유지 보수관리
3. 건설기계의 운영 및 대여관리
4. 건설기계의 정비·수리·기술검사관리
5. 건설기계 부속품, 도로유지 보수자재 및 물품수급과 저장관리
6. 도로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7.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8. 도내 각종 공사의 재료시험 및 물품관리
9. 그 밖의 토목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절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제58조(설치) ①팔공산도립공원과 가산산성야영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이하“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113-1번지에 둔다.

제59조(소장)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0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도립공원의 조성 및 개발
2. 도립공원 자원 및 가산산성야영장의 시설보호 유지관리
3. 도립공원과 가산산성야영장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4. 가산산성야영장의 조성 및 운영
5. 기타 도립공원 및 야영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8절 서울사무소

제61조(설치) ①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도내유치, 지역생산품의 판로개척과 서울 및 해외지역의 정보·자료수집으로 지방자치시대의 효율적인 도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서울사무소(이하“서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62조(소장) 서울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도와 중앙부처와의 업무연락 및 협의
2. 기업체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안내

3. 농수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판로개척과 직판활동 지원
4. 서울 및 해외지역의 정보·자료수집
5. 도정·관광홍보 및 자료제공
6. 재경도민단체·출향인사와 업무협조 및 도정홍보 등
7. 그 밖의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수행

제9절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제64조(설치) ①자연산 토종 동식물의 이용개발에 관한 연구, 임업에 관한 산림사료의 보관, 전통 산림문화의 개발, 산림 유전자원 보존에 관한 연구 및 사업의 시행, 야생동물 증식·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이하 “산림자원 종합개발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69번지에 둔다.

제65조(소장)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산림박물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득식물생태숲, 야생동물생태공원,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
3. 산림에 관한 사료의 수집, 보관
4. 산림사료에 대한 학예연구
5. 임산물의 판매·유통지원
6. 전통산림문화 개발, 보존·보급에 관한 사항
7. 야생화 증식보급 및 품종개발
8. 전통 목재 이용기술의 보존과 조사 및 연구 개발
9. 야생동물유전자원의 수집보존과 증식·보급에 관한 사항
10. 야생조수구조와 치료, 진단에 관한 사항
11. 약용식물, 특산식물의 품종개발, 상품화
12. 산림소득원 창출과 기술개발, 연구, 보급에 관한 사항
13. 토종산림 동식물의 특수이용 가공에 관한 연구

14. 특용식물 자연생태 및 증식에 관한 연구, 조사
15. 자연산 동식물 상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인증
16. 기타 산림문화, 자연동식물 및 임산물 이용·가공 등 사업 수행상 필요한 사항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농수산물
농정국으로, 보건환경산림국을 환경산림수산물국으로, 사회복지여성국을 보건복
지여성국으로, 건설도시국을 건설도시재난국으로, 기획관리실 "정보통신 분야"는
과학정보산업국으로, 경제통상실 "과학기술진흥 분야"는 과학정보산업국으로, 농
수산물국 "해양수산물 분야"는 환경산림수산물국으로, 보건환경산림국 "보건위생 분야"
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자치행정국 "민방위·경보통제 분야"는 건설도시재난국으로, 자치
행정국 "비상대책 분야"는 기획관리실로 본다.
- ③(한시기구)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별표1]

농산물원종장, 잠사곤충사업장, 생물자원연구소, 신물질연구소,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 및 위치
(제19조 제5항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농 산 물 원 종 장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859-1	
잠 사 곤 충 사 업 장		경상북도 상주시 낙양동 123-29	
생 물 자 원 연 구 소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천리	
신 물 질 연 구 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상리리	
특 화 작 목 시 험 장	성 주 과 채 류 시 험 장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대천리	
	청 도 복 송 아 시 험 장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구라리	
	영 양 고 추 시 험 장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상 주 감 시 험 장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장동리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구 미 화 훼 시 험 장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풍 기 인 삼 시 험 장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별표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30조 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포항소방서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6-7	포항시 일원, 영덕군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소방서	경주시 황오동 389-11	경주시 일원
김천소방서	김천시 지좌동 726-4	김천시 일원
안동소방서	안동시 법흥동 32-9	안동시 일원, 청송군 일원, 영양군 일원
구미소방서	구미시 공단동 207	구미시 일원
영주소방서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125-1	영주시 일원, 봉화군 일원
영천소방서	영천시 성내동 48-23	영천시 일원
상주소방서	상주시 서성동 55-1	상주시 일원
문경소방서	문경시 흥덕동 534-1	문경시 일원, 예천군 일원
경산소방서	경산시 조영동 314	경산시 일원, 청도군 일원
의성소방서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700-3	의성군 일원, 군위군 일원
성주소방서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49	성주군 일원, 고령군 일원
칠곡소방서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산5-1	칠곡군 일원
울진소방서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363	울진군 일원

수 정 조 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경제통상실,자치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 <u>과학기술진흥국</u> ,농정국,환경산림수산국,보건복지여성국, <u>건설재난관리국</u> ,소방본부를 둔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경제통상실,자치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 <u>과학정보산업국</u> ,농정국,환경산림수산국,보건복지여성국, <u>건설도시재난국</u> ,소방본부를 둔다.
제10조(<u>과학기술진흥국</u>) <u>과학기술진흥국</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u>과학정보산업국</u>) <u>과학정보산업국</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u>건설재난관리국</u>) <u>건설재난관리국</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u>건설도시재난국</u>) <u>건설도시재난국</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1. 14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86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799명
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925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4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93명

제3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의 규정)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집행기관의 정원 중 83명(혁신분권담당관실 운영인력 1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재정과 복식부기 운영인력 4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업노동과 실업대책업무 인력 1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운영인력 14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단 운영인력 17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농업기술원 농업정보센터 운영인력 10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조경사업추진인력 4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인력 22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별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3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 계			3,861	1,098	93	2,301	369
정 무 직			1	1			
일 반 직	소 계		1,271	899	55	82	235
	2~3급		1		1		
	3 급		7	6		1	
	4 급		61	40	7	6	8
	5 급		238	189	8	18	23
	6 급		436	312	18	28	78
	7 급		454	318	20	24	92
	8 급		74	34	1	5	34
별 정 직	소 계		33	22	5	5	1
	1급상당		1	1			
	3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4	4			
	6급상당		8	5	1	2	
	7급상당		12	8	1	3	
	8급상당		4	2	1		1
연 구 직	소 계		197	2		165	30
	연구관		28	1		26	1
	연구사		169	1		139	29
지 도 직	소 계		26			26	
	지도관		6			6	
	지도사		20			20	
소 방 직	소 계		1,925	47		1,878	
	소방정		16	2		14	
	소방령		27	9		18	
	소방경		60	6		54	
	소방위		125	10		115	
	소방장		259	10		249	
	소방교		544	9		535	
	소방사		894	1		893	
기 능 직	소 계		364	127	33	101	103
	6 급		11	5	1	3	2
	7 급		32	18	3	6	5
	8 급		54	12	5	17	20
	9 급		118	36	4	37	41
	1 0 급		149	56	20	38	35
교 원	소 계		44			44	
	학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1			11	

의정활동보고서(제195회 임시회)

2005. 3 인쇄 / 2005. 3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